61. 개인묘지 설치신고

□ 민원 처리현황

담당부서	노인아동여성과	처리기간	7일	수수료
근거법령	장사 등에 관한 법률			없음

□ 개인묘지 신고 방법 등

"개인묘지"라 함은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.

가. 면적 : 30㎡ 이하

-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30㎡를 초과할 수 없고 합장의 경우도 동일
- 개인묘지 내 분묘의 점유면적은 30㎡ 이하로 평면도 위에서 분묘와 시설물을 포함한 면적을 구적하며, 경사면이 있는 경우 경사면 끝에서부터 계산(경사면은 면적에 미포함)

나. 시설물 설치기준

- 상석 1개, 비석 1개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, 그 표면적은 3㎡ 이하)
- 그 밖의 석물(인물상 제외)은 1개 또는 1쌍(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 이하)
  - 이러한 시설물은 묘지 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

다. 개인묘지의 설치기준

-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, 신고 면적 안에서 설치
- 그 외 사항은 묘지의 공통설치기준과 동일

라. 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(시행규칙 제5조, 수리가 필요한 신고)

(1) 설치신고 : 사후(事後)신고

-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(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)
- 구비서류 : ① 평면도, ②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(약도) 또는 사진 ③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(타인 소유의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)

○ 사설 묘지(개인묘지, 가족묘지, 법인묘지)의 공통설치기준

- 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 또는 평장(平葬)으로 하되,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, 평분의 높이는 50㎝ 이하여야 함

- 묘지는 지형·배수·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·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함
- 묘지는 다음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. 다만,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다음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 - 「도로법」 제2조제1호의 도로, 「철도산업발전기본법」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, 「하천법」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곳
  -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, 학교,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진 곳
    ※ 개인·가족묘지에 한하여 이격 거리기준이 각각 "200m 이상", "300m 이상"으로 완화
  - 시장·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란 토지의 상황 즉, 지형의 형태에 의한 능고· 차폐시설 등으로 묘지예정지가 인가밀집지역 등으로부터 가시권 밖에 위치하게 되는 경우 등임
  - "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"은 한마을 전체의 호수를 기준으로 하되 "동, 리" 등 행정구역 단위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, 그 지역의 지형적 상황이나 생활의 유지관계, 취락의 형성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(단, 20호는 일종의 기준이고 단순히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은 아님)
- 위반시 벌칙 등(법 제31조, 제40조, 제41조, 제43조)
  - 1차 위반시 개수명령 또는 이전명령, 2차 위반시 시설 일부의 사용금지, 3차 위반시 시설 전부의 사용금지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3개월), 4차 이상 위반시 시설폐쇄(법인묘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)
  - 묘지의 이전·개수명령·시설의 폐쇄·사용금지 명령 또는 업무의 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(대리인 등)뿐만 아니라 그 개인(법인)에 대하여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이전 또는 개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해당 묘지의 연고자는 5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

(2) 설치변경신고 : 사후신고(설치변경 후 30일 이내에 신고)

- 설치변경신고 사유(시행령 제12조)
  - 개인 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,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-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. 다만, 봉분(封墳) 또는 평분(平墳)에서 평장(平葬)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(2020. 1. 7. 시행)

①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이내

② 봉분의 윗부분은 평면으로 하고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0㎝ 이하

③ 봉분이 없는 형태로 지면과 같은 높이로 조성, 비석 역시 평면으로 설치

- 구비서류 : 변경도면 첨부

(3) 처리기간 : 7일

(4) 처리절차

구 분	내 용	주 체
신고서 작성	묘지, 사망자, 설치자, 관리자, 신고인 관련사항 작성, 구비서류 첨부	신고인
접 수	신고서류 접수 및 구비서류 확인	처리기관
검 토	신고사항 적합여부 검토	처리기관
결 재	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 관련 보고 및 결재	처리기관
관리대장 등 작성	개인묘지 설치(변경)신고내역 및 관리대장 · 묘적부 작성(입력)	처리기관
수 리	신고인에게 신고증명서 발급(출력) 교부	처리기관

(5) 위반시 벌칙 등(법 제42조)

-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200만원, 2차 위반시 25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설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, 2차 위반시 200만원, 3차 이상 위반시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과태료 부과 대상자 :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
  -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알 수 없는 경우
    - 연고자의 확인(실제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),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우선순위에 따라 부과

□ 문의처

부서명	전화번호	비고
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	930-4742	